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8
----------	------

2021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제5차 교육위원회(2021. 9. 8.)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2020. 6. 9.)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 변경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6조)

나. 기금 통합 설치 및 계정 구분(안 제2조)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다. 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신설(안 제3조)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구체화(안 제4조)

마.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안 제5조 및 제10조)

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문장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 삭제(제13조 및 제14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8호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는 세입이 감소하거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될시 세입의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동 조례가 제출된 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이 법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과 통합되어 운용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¹⁾
- 이에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이유를 들어 조례안의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수정하여 가결한바 있습니다.

1) 동 조례의 안건 제출일은 2020년 5월 25일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은 2020년 6월 9일임.

-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의 명칭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을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구분·운용할 것을 독려하면서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²⁾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 제16조의 사항과 교육부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예시(안)’ (이하 “조례 예시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

1)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제1항)과 적립요건(제2항), 그리고 용도(제3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재원 중 제1호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은 기금의 적립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조례가 교육청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기준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제3조제2항³⁾)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자료”, 2020.10.8.

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 우선 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2호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제3호에서는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을 적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체적 적립요건은 조례 예시안과 행안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비율⁴⁾을 준용한 것으로,

행안부 기준에서는 기금 적립을 위한 전년도 증가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반해 동 조례안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산정하도록 하여 조례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4조제3항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4조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제4호에 규정된 환경개선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4)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

□ 적립 비율

- 각 자치단체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상 적립
- * (참고) 현재 감채기금의 경우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50%를 적립

적립비율	시도(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시(15개)	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 자치구(211개)
	①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 ②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①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②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 ①과 ② 요건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을 선택 적립 가능

기금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단일 기금을 통한 명확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검토(안 제12조)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현행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 제4조⁵⁾에 따른 것인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4조제1항 단서).
- 한편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에 시행되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은 현행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2025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금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정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비록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기금 조례의 제정일(규정일)을 기금 설치의 기준일로 판단된다는 점을 중

5)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합적으로 감안할 때(법제처 의견12-03566)),

동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제정 시행일에 맞춰 2025년 7월 15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이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의 삭제에 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던 운영세칙과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시행규칙을 삭제하였는바,

먼저 제13조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제13조는 동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례나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원회 운영상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6)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임(법제처 2014.10.27.회신, 의견14-0213참조), 기금의 존속기한...(중간 생략)... 원칙적으로 기금의 설치 시(조례 제정 시)부터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21.11.16.회신, 의견12-0356)

으로 판단됩니다.7)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굳이 삭제하고자 한다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법제처 의견18-00258)에서 교육규칙 규정의 삭제는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4) 기타 사항에 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괄 변경하였는바, 이는 동 기금의 명칭을 법 16조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법적 체계와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7)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심의에 앞선 실무자간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규정, 예산분석 등 전문적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규정,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자료 수집을 위한 관계 기관에 관한 협조 요청 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개최에 관한 규정 등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기도 한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17쪽 참조

8) 「지방자치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삭제된 현행 조례 제13조(운영세칙)를 동 조례안 제12조에 신설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18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운영세칙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바, 그 필요성에 따라 운영세칙을 안 제1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비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중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을 “교육감은 기금을”로,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6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으로 한다”를 “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4조는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교육비특별회계</u> -----</p> <p>2. ~ 3. (생략)</p> <p>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p> <p>1. <u>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u></p>	<p><u>재원으로 조성한다.</u></p> <p>② <u>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u></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u>재정안정화 계정-----</u></p> <p>1. <u>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u></p> <p>가. <u>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u></p> <p>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p> <p>다. 자체수입</p>
<p><신설></p> <p><신설></p>	<p>2. <u>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u></p> <p>3. <u>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u></p>

현행	개정안
<p>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u>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u>한 금액</p> <p><신 설></p>	<p><u>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u></p> <p>4. ----- ----- <u>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u>----- -----</p> <p>③ <u>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u></p> <p>1. <u>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u></p> <p>2. <u>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u></p> <p>3. <u>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u></p>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p>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___교</p>	<p>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p> <p><삭 제></p> <p>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p>

현행	개정안
<p>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u>의하여</u> 운용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 ----- ----- ----- 따라 -----.</p> <p>② <u>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u></p> <p>1. <u>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u> 2. <u>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u></p> <p>③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6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p>	<p>제6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u>교육감은 기금을 -----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 ----- ----- ----- -----</u></p> <p>-. ② -----</p>

현행	개정안
<p>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③ (생략)</p> <p><신설></p> <p>④ <u>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p> <p>1. <u>당연직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u></p> <p>2. <u>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⑤ <u>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②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u></p> <p>⑤ <u>위원-----</u></p> <p>-----</p> <p>-----</p> <p><u>이 된다.</u></p> <p>1. <u>당연직 위원 :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u></p> <p>2. <u>위촉직 위원 :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u></p> <p>⑥ -----</p> <p>----- 있다.</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행	개정안
<p>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u>개의(開議)</u>----- ----- -----.</p>
<p>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u>심의안건</u>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③ ----- ----- -, <u>심의 안건</u>----- ----- ----- ----- ----- ----- ----- -----.</p>
<p>④ 위원장은 <u>심의안건</u>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④ ----- <u>심의 안건</u>----- ----- ----- ----- -----.</p>
<p>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u>예산총괄담당</u> 사무관으로 한다.</p>	<p>제10조(간사) ----- ----- -----<u>기금업무</u> 담당 <u>사무관이 된다.</u></p>
<p>제11조(회계공무원) ① <u>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u></p> <p>1. <u>기금운용관</u> : 기획조정실장</p> <p>2. <u>기금출납원</u> : 예산총괄담당사</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무관</u></p> <p>②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u></p> <p><u>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1조(존속기한) -----</u> <u>-- 2024년 12월 31일까지-----</u> <u>-.</u></p> <p><u>제12조(운영세칙)-----</u> <u>-----</u> <u>-----</u> <u>-----</u> <u>-----</u> <u>-----</u> <u>-----</u></p> <p><u><삭 제></u></p>